

일자리 기여 개

등록번호	재난예방과-2550
등록일자	2022. 4. 29.
결재일자	2022. 4. 29.
공개구분	비공개(6)



소방교	예방대책팀장	재난예방과장	과천소방서 소방서장
최민규	음정삼	교육	2022. 4. 29. 박정훈
협 조	소방행정과장 임정호 현장대응1단장 박인선 소방특별조사팀장 곽호철		

-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-
'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계획



과천소방서
(재난예방과)

-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- '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계획

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및 유도를 위한 '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활성화 추진계획임.

I 관련근거

- 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 및 시행령 제19조
- 道재난예방과-20773호('21.11.29.) 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처리 지침」
- 道재난예방과-5480호('22.4.05.) 「'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계획 알림」

II 추진개요

- (기 간) 2022년 4월 ~ 11월 (8개월간)
- (추진대상) 다중이용업소 90개소 ※ 22년 현재 과천 우수업소 및 갱신대상 없음
- (선정요건) 「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」 제19조 요건 적합 업소(신규)
- (인센티브) 특별조사·안전교육 면제(2년), 인증표지 부착·소방서장표창 등

< 다중이용업소 현황 ('22년 현재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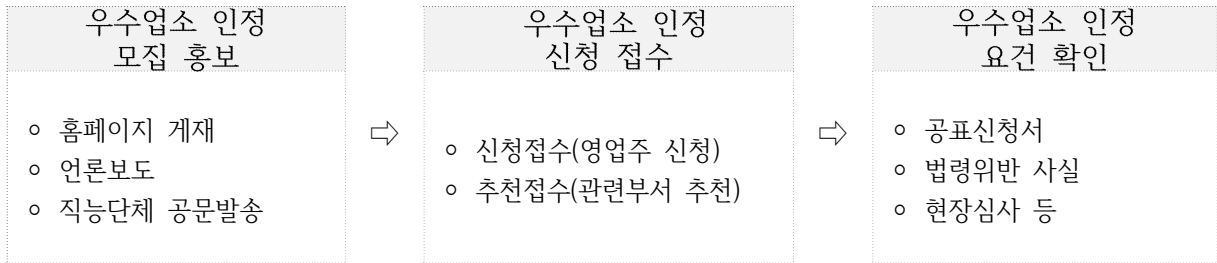
계	휴게 음식점	일반 음식점	단란 주점	제과점	PC방	노래 연습장	스크린 골프연습장	고시원
90	8	67	2	1	4	6	1	1

III 추진절차 및 세부계획

신규대상		
① 접수 및 요건확인 ○ (소방서) 모집 홍보 ○ (소방서) 신청 접수(영업주) ○ (소방서) 우수업소 요건확인 4월 ~ 7월	⇒	② 공고 및 심사 ○ (본부) 공고(20일), 이의접수 ○ (본부) 심의회 구성 8월 ~ 9월
	⇒	③ 공표·표지제작 ○ (본부) 공표 ○ (소방서) 표지 제작, 부착 10월 ~ 11월

1 우수업소 홍보·접수 및 요건확인 (예방대책팀)

- (기간) '22. 4. 29.(금) ~ '22. 7. 20.(수) / (3개월)
- (선정대상) 90개소 중 신규 신청 대상·영업주 관심도 고려하여 선정
- (추진내용)
 - 홍보 : 홈페이지 게재, 외식업 지부 등 직능단체 공문발송, 언론보도 등
 - 신청접수 : 영업주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접수
 - 추천접수 : 관련부서 추천(민원팀, 소방특별조사팀, 소방패트롤팀, 안전센터 추천 등)
 - 요건확인 : 영업주 관심, 소방시설 관리, 화재 이력 등 서류 및 현장 심사
- (추진절차)



《 우수업소 선정요건 확인 (령 제19조) 》

1.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「소방시설법」 제10조제1항 각 호 위반행위 없을 것.
☞ 소방특별조사팀, 소방안전패트롤팀 점검(단속) 결과 확인
2.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·건축·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.
☞ 관련기관 사실 확인
3.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. ☞ 화재조사 확인
4. 자체계획 수립하여 종업원의 정기적 소방교육·훈련 실시, 최근 3년간 기록 보관할 것
☞ 교육 및 훈련사진 등,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교육 이수증명서, 세부점검표 제출 같음

② 인정 예정 공고 및 심의회 구성·운영 (본부)

- (기 간) (공고) 8월 (20일 간), (심의회) 9월 중
- (선정절차) 인정 예정 공고 ⇨ 심의회 구성 ⇨ 선정심의 ⇨ 의결
 - 예정공고 :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, 지역 일간지 신문 활용
 - 심의회구성 : 심의위원 6~9인(위원장 호선) 구성, 외부위원 1/3 이상
 - 선정심의 :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 확인 및 서류심사·현장실사 고려
 - 의 결 : 재적위원 2/3이상(위원장 포함)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
- (선정방법) ① 관리 실태 (정성적 요소) ②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(정량적 요소)
 - ②에 부합하여도 심의를 통해 관리 실태가 불량인경우 우수업소 불인정 가능
 - 부적합 시 반드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사유 통보

③ 우수업소 심의결과 통보 및 인정공표 (본부)

- (기 간) 10월 중
- (결과통보) 우수업소 영업주에 심의결과 통보
- (인정공표) 홈페이지, 도보 게재 등 인정공표

④ 우수업소 인증표지 제작 및 인센티브 (예방대책팀·회계장비팀)

- (기 간) (표지제작) 10월 중, (부착) 11월 9일
- (제작/부착) 서 예산 활용하여 표지 제작 및 부착
- (재질/규격) <붙임 2> 표지 중 택 1
- (인센티브) 소방서장 표장* 수여 및 법 제21조제3항(소방특별조사 등) 면제
 - * 법령개정(표창 근거) 前 “우수업소 업무처리 지침”에 따라 우선 적용

V 행정사항

- 각 과(단)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많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·안내 등 적극 협조
- (회계장비팀) 우수업소 선정시 인증표지 현판제작 지원
- (예방대책팀)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 관련 언론 등 홍보
- (소방특별조사팀·소방패트롤팀) 소방특별조사 업무 추진 시 관계인 홍보 추진 및 신청대상 현지 실사
- (소방사법팀)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대상물 등에 대하여 최근 3년간 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 각 호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파악에 협조
- (지휘조사팀)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대상물들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여부 파악에 협조

- 붙임 1.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.
2.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, 재질 등 1부.
3. 안전관리우수업소 현장실사 평가표(안) 1부.
4. 제출서류 목록 1부.
5. 추진절차 및 주요 변경사항 1부.
6. 과천 다중이용업소 현황 1부. 끝.